

##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3. 22

예천군의회의장



### 1. 제정이유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

나. 평생교육의 활용(안 제5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다.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6조)

-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및 행정적 지원 가능

라. 예산지원(안 제7조)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murayzzang@korea.kr

##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 련 근 거 】

###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